

전자민원처리공개

전자민원(국민신문고)으로 제출하신 처리내역입니다.

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01. 민원내용

민원요지 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시행자 관련 질의

접수번호 1AA-1712-123320

접수일자 2017.12.14

질의내용

(내용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도정법)이 2018년 2월 9일 개정·시행될 예정이며, 제25조(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시행자)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중,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·군수등, 토지구획공사등,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음. 본 구역은 1980년 도시재개발법 제4조, 동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되고, 2003년 도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된 지역임 (질의) 본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시행지구가 도시환경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제안할 경우, 제2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0인 이상으로 변경제안이 불가능 한지 여부? 갑설) 해당구역은 신규가 아닌 기 결정된 지역에 대한 변경으로 제25조를 적용받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변경지정 제안이 가능함 을설) 해당구역이 기 결정된 구역이라 하더라도 시행지구에 대한 토지등소유자가 20인 이상이라면 제25조에 따라 변경지정 제안이 불가능함

02. 민원처리 내용

담당부서 국토교통부 > 주택토지실 > 주택정책관 > 주택정비과

담당자 하철호

전화번호 044-201-3390

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?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,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 1. 민원요지 ◦ 개정 법률의 부칙 관련 2. 답변내용 ◦ 개정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부칙 제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가 법 시행 전 이미 최초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◦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(하철호, ☎044-201-33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→민원안내「자주하는질문(FAQ)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은 “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”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. [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]